# [회원관리 규정]

[2023.08.31. 제정] [2024.. . 개정]

## 제1장 총칙

제1조(정의) 본 규정은 '사단법인 한국방폭협회'(이하 "본 협회"라 한다)의 회원 관리에 대한 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에 효율화를 위해서 총회에서 의결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5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협회 회원(이하 '회원'이라 한다)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회원 관련 제반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종류

- 제3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,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- 제4조(회원의 종류) 회원은 일반회원, 정회원, 기업회원,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다.
  - ① 【일반회원】 학생(대학원생포함) 및 <mark>개인</mark>이 가입원서와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며 총회에 의결권이 없다.
  - ② 【정회원】정회원은 협회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 활동에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  - ③ 【기업회원】기업회원은 기업체 등에서 가입하는 것. 기업회원 가입 제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  - ④ 【명예회원】이사회 의결을 걸쳐 회장이 추천하는 기업체·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기부금조로 일부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

#### 제3장 회원의 가입절차 및 승인

제5조(회원의 가입절차) 신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'회원가입 신고 서'(서식 1)를 본 협회에 제출하면서 가입비 와 년 회비를 납부하며, 기존 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한다.

### 제6조(회원의 승인)

- ① 【일반회원】은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 제출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한다.
- ② 【정회원】, 【기업회원】, 【명예회원】은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심의.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#### 제4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

#### 제7조(정회원 및 기업회원의 권리)

- ① 정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과 회무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②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

### 제8조(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)

① 일반회원, 명예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, 세미나·강연 및 기타협회에서 행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. 다만, 총회 개최 시 의결권이 없다.

## 제9조(회비)

① 회원의 회비는 일반회원비, 정회원, 기업회원, 명예회원회비로 구분하며, 이사회를 통해 회비를 정한다.(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)

구 문	일반회원	정회원	기업회원	명예회원
가입비	20,000원	100,000원	1,000,000원	_
년회비	30,000원	120,000원	500,000원	_

- ②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당해년도까지 납무 하여야 한다.
- ③ 협회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이미 납무한 가입비, 회비, 기타 협회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0조(회원의 의무)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본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③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- ④ 회원의 윤리. 품의 유지. 실천의무
- ⑤ 정관 및 제반규정으로 정하는 각종 자료제출과 보고에 회원으로서 적극적 협조

#### 제11조(회원의 혜택)

- ① 협회가 주관하는 방폭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비 활인 (Naver에 에스텍코리아를 검색하면 방폭협회에 가입할 경우 교육비 5% 활인)
- ② 회원의 경력관리(경력수첩 발급 등)
- ③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각 종 행사에 참여 우선권
- ④ 정부포상에 대한 우수 직원 우선 추천
- ⑤ 협회가 발간하는 각 종 홍보물 및 책자 보급 등
- ⑥ 정회원 및 기업회원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관련자료 제작시 협회 로고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사전 협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 후 사용

#### 제5장 회원의 탈퇴, 제명 및 재가입

제1조(회원의 탈퇴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'회원탈퇴서'(서식 2)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2조(회원의 제명)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조(회원의 재가입)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탈퇴한 자가 회원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년경과 후 재가입 할 수 있고, 제9조에 따라 제명된 자가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일로부터 5년경과 후 재가입 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칙

제1조(포상) ①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될 경우 이사회의 심의. 의결로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②협회는 회원이 아닌 자. 단체. 업체가 타의 귀감이 되고 협회와 방폭산업계에 공헌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
제2조(권리 상실)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## 제7장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제정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 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사단법인 한국방폭협회<서식 1> 회원가입신고서(양식)<서식 2> 회원탈퇴서(양식)